# 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정읍시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첫 눈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**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**제3조(협약금액)**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73,529,000원으로 한다.

**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** 위 사업의 계약상대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 년 10월 일

**발주기관명** 정 읍 시 청

**협약업체명** ㈜첫 눈

# 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정읍시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마크애니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**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**제3조(협약금액)**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액 3,303,000원**으로 한다.

**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** 위 사업의 계약상대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**발주기관명** 정 읍 시 청

**협약업체명** ㈜마크애니 (인)

# 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정읍시청
○ 제조사 . 공급사 : (유)시원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**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 . 공급사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**제3조(협약금액)**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액 75,508,000원**으로 한다.

**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** 위 사업의 계약상대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**발주기관명** 정 읍 시 청

**협약업체명** (유)시 원 (인)

# 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정읍시청
○ 제조사.공급사 : 이노뎁㈜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용.협약의 범위)**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.공급사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**제3조(협약금액)**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2,440,000원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**제4조(물품공급.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** 위 사업의 계약상대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**발주기관명** 정 읍 시 청

**협약업체명** 이노뎁㈜ (인)